

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(성북)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675
----------	------

2021년 9월 10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
2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18일
3. 상정일자 :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1년 9월 6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복지정책실장 정수용)

1. 제출이유

- 「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(성북)」는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,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기존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통합·운영하였으나,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법적(시설·운영)기준에 맞는 시설로 정비하여,

- 피해장애인 지원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,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1) 위탁사무명 : 「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(성북)」 관리 및 운영

2)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(비공개 시설)
- 시설규모 : 316m²
- 시설용도 :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
- 입소자 정원 : 8명
- 종사자 현황 : 9명(주방 보조인력 1명 포함)

3)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(피해장애인 쉼터)
 -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
(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)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○ 필요성

-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위탁 지속 필요

4) 위탁기간 : 2022. 1. 1. ~ 2026. 12. 31.(5년)

5) 위탁사무 내용

-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
-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
- 장애인학대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
- 일상생활 훈련, 사회참여 활동, 직업재활 훈련 등 사회복지 및 자립 지원
- 그 밖에 입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6)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-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·단체 등 공개모집

7)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

- 소요예산 : 713백만원(2022년)
- 산출내역 : 인건비 510백만원, 운영비 42백만원, 사업비 50백만원, 시설비 100백만원, 자산취득비 11백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[장애인복지법]

제59조의13(피해장애인 쉼터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]

제10조(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(이하 "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
 2.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
 3. 장애인학대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
 4. 일상생활 훈련, 사회참여 활동,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지 및 자립 지원
 5.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시장은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[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]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예산 편성 필요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동의안의 취지

- 본 동의안은 ‘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(성북) 관리 및 운영’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¹⁾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,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임.
- 시장이 민간위탁 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
 -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
 - 장애인학대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
 - 일상생활 훈련, 사회참여 활동, 직업재활 훈련 등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
 - 그 밖에 입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는 「장애인복지법」²⁾ 제59조의13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시설로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.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

2) 「장애인복지법」제59조의13(피해장애인 쉼터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2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현황 민간위탁의 필요성

가.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현황

- 서울시에서는 피해장애인 임시보호를 통한 심리적 안정 및 치료를 지원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현재 2개소의 피해장애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,

<표>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현황

구분	성북 피해장애인쉼터	서대문 피해장애인쉼터
소재지	성북구	서대문구
개소일	2015. 03. 01.	2020. 12. 17.
연면적	316㎡ (단기거주시설과 통합운영)	151.47㎡
종사자 정원/현원	3명/ 3명(센터장1, 직원2)	8명/ 4명(센터장1, 직원3)*
입소자 정원/현원	5명/ 5명	8명/ 4명
위탁기간	‘17. 1. 1. ~ ’ 21. 12. 31.	‘20. 7. 20. ~ ’ 23. 07. 19.

- 주요 사업내용은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(3개월 이내) / 피해 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/ 장애인 학대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 / 일상생활 훈련, 사회참여 활동,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.

<표> 2020년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실적

- 입소 및 퇴소 인원 : 입소 14명, 퇴소 7명

(단위:명)

계	성별		연령별						
	남	여	10대	20대	30대	40대	50대	60대 이상	
입소	14	4 / 10	4	4	0	1	2	3	
퇴소	7	3 / 4	2	3	-	-	1	1	

- 입소 의뢰기관

(단위:명)

계	서울시장래인 권익옹호기관	아동보호 전문기관	서울지방 경찰청	기타
14	7	3	1	3(시군구)

- 입소자 지원현황

(단위:명)

계	심리상담 및 치료지원	의료	생활 훈련	여가	사회참여 활동지원
14,082	217	206	12,207	1,076	376

- 사회복지 유형

(단위:명)

계	자립생활 주택 등	공동생활 가정	병원	원가정	기타
7	3	1	1	-	2(생활시설)

○ 집행부에서는 현재 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에 통합 위탁 운영 중인 성북 피해 장애인 쉼터의 위탁계약 만료일('21.12.31.)이 도래함에 따라, 법적 설치·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정비하고 민간위탁(신규위탁)을 추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.

- 피해 장애인 쉼터의 법적 시설 운영기준이 마련('17.8.)되기 전인 2015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로, 금번 위탁 추진 시 종사자 인원·입소자 정원 증원, 시설 개선(남녀 구분 거주

공간 마련)을 추진하여 법적 설치·운영기준에 맞는 시설로 전환하려는 것임.

〈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기준〉 (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4)

- 시설기준 : 연면적 66㎡이상, 거실·상담실·화장실·조리실·의무실·집단활동실·비상재해대비시설, 그밖의 거주 및 생활지원에 필요한 시설
(조리실, 의무실, 집단활동실은 장애인복지시설과 공동사용가능)
- 인력기준 : 시설장1명, 생활지도원 등 종사자 5명(사회복지사, 정신건강전문요원, 임상심리사 등)
- 운영기준 : 입소정원 8명, 운영시간 7일 24시간 운영 등

나. 민간위탁의 필요성

- 피해장애인 쉼터의 주요기능은 피해 장애인의 긴급 분리를 통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임시 보호를 실시하고, 피해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정서 안정 및 사회복지귀를 지원하는 것으로,
- 동 위탁사무의 특성상 피해장애인 쉼터의 주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지역자원 활용이 가능한 민간전문기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 권익보호 사무에 대하여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 -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지원, 직업재활 훈련 등을 통한 사회복지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.

- 피해장애인 쉼터는 신체적 학대, 정신적 학대, 성적 학대, 경제적 착취, 유기·방임 등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 장애인에 대하여 신속한 임시보호를 실시하고, 피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자 자립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쉼터 설치·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.
- 또한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³⁾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를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3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(성북)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67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(성북)」는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시설로,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기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과 통합·운영하였으나,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법적(시설·운영)기준에 맞는 시설로 정비하여,
- 나. 피해장애인 지원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,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「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(성북)」 관리 및 운영
- 나. 위탁시설 개요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(비공개 시설)
 - 시설규모 : 316㎡
 - 시설용도 :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
 - 입소자 정원 : 8명
 - 종사자 현황 : 9명(주방 보조인력 1명 포함)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(피해장애인 쉼터)
-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
(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○ 필요성

-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위탁 지속 필요

라. 위탁기간 : 2022. 1. 1. ~ 2026. 12. 31.(5년)

마. 위탁사무 내용

-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
-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
- 장애인학대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
- 일상생활 훈련, 사회참여 활동, 직업재활 훈련 등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
- 그 밖에 입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-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·단체 등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

- 소요예산 : 713백만원(2022년)
- 산출내역 : 인건비 510백만원, 운영비 42백만원, 사업비 50백만원,
시설비 100백만원, 자산취득비 11백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[장애인복지법]

제59조의13(피해장애인 쉼터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]

제10조(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(이하 "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
2.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
3. 장애인학대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
4. 일상생활 훈련, 사회참여 활동,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
5.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[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]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예산 편성 필요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류미숙 (☎2133-7362)